

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5 일
신청인	① 상호(명칭)			
	② 성명(대표자)		③ 생년월일	
	④ 주소	(전화:)		
⑤ 터미널사업의 종류				
⑥ 위치				
⑦ 변경하려는 내용				
⑧ 변경이유				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시·도지사 귀하				
※ 첨부서류 1. 변경에 관한 신·구 대비도면 1부 2.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4조제1항제2호의 서류(변경 전 및 변경 후의 서류) 1부 3. 변경되는 부분의 공사비명세서 1부				수수료 15,000원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